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  
PROSECUTION SERVICE

## 서울동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만흠  
전화 02-2204-4201

## 보도자료

2024. 4. 16. (화)

### 10억 원대 사기, 횡령,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으로 징역 8년 6월 선고받고 보석 후 도주한 피고인 검거, 보석보증금 1억 원 몰취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사항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동부지검 공판부(부장검사 박대환)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불출석·도주한 10억 원대 사기, 횡령,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피고인 A○○에 대하여 납부된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몰취하여 국고귀속('24. 3. 5.)하고 피고인을 추적하여 검거('24. 4. 1.)하였음
  - 피고인은 '18. 8.경 1심에서 징역 8년 및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기환송되었고, 재판 중 보석보증금 1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석방된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는 등 중형 선고가 명백히 예상되자 '23. 8.경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임
    - '24. 1.경 피고인이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하여 잠복하는 등 검거를 시도한 데 이어,
    - '24. 3. 8. 특별검거팀을 편성하여 은신처 의심 장소들을 수차례 현장탐문하고 대포폰을 찾아내어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하여 피고인 검거
- ※ 특별검거팀은 공판부 검사 1명을 팀장으로, 검찰수사관 4명을 팀원으로 구성
- 앞으로도 검찰은 재판 중 도피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

# 1

## 피고인 재판 중 도주 및 보석보증금 몰취

### □ 피고인

- A○○(52세, 건설업)

### □ 사건 경과

- '15. 4. 30. 검찰, 특경법위반(횡령) 등으로 불구속 기소  
※ '17. 6. 21.까지 성폭력, 뇌물공여 등 5건 추가 병합 기소
- '18. 8. 24. 1심, 징역 8년 및 징역 6월 선고(법정구속)

#### (판결문 기재 주요범죄사실)

△△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 5,000만 원 **횡령**,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하여 **뇌물공여**, △△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4억 원 사기, 분양사무실 직원을 **성폭력** 등

- '18. 12. 14. 2심, '국민참여재판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거나 희망 여부를 숙고할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.'는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
- '20. 2. 5. 파기환송심, 보석허가 결정(보석보증금 1억 원) 및 피고인 석방('20. 2. 12.)  
※ '19. 4. 19.까지 △△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을 빙자하는 등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 교부받은 사기 범죄 2건 추가 병합 기소
- '23. 8. 10.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피고인 불출석 및 보석취소 결정
- '24. 2. 7. 검찰,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
- '24. 2. 28. 파기환송심, 보석보증금 몰취 결정
- '24. 3. 5. 검찰, 보석보증금 1억 원 국고귀속

## 2

### 피고인 집중 추적 및 검거

- 검찰은 보석취소 결정 즉시 피고인을 검거대상자로 등재하여 추적을 실시하였고, '24. 1.경 피고인이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 인근에서 잠복하는 등 피고인 검거에 주력해 왔음
- 검찰은 3. 8. 특별검거팀을 편성하여 피고인이 은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수차례 현장탐문하고, 방대한 사건관계인의 통화내역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특정한 데 이어 대포폰의 통화내역 및 피고인의 동선 분석 등을 거쳐 4. 1. 경기 수원시에서 피고인을 검거하였음
  - ※ 특별검거팀은 공판부 검사 1명을 팀장으로, 검찰수사관 4명을 팀원으로 구성

## 3

### 의의 및 향후 계획

- 검찰은 보석보증금을 몰취·국고귀속함으로써 도주한 피고인이 추후 검거되어 보석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였음
  - ※ 보석보증금은 피고인 석방 이후 도주를 억제하기 위한 담보적 성격이 있음
- 피고인은 1심에서 이미 징역 8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기일에 불출석 도주한 자로, 검찰은 특별검거팀을 편성하여 약 1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였음
- 앞으로도 검찰은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하여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☐